

사단법인 아시아이주여성센터

전북이주여성 상담소 직원 채용 재공고

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상담을 수행하는 전북이주여성상담소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2년 3월 14일

1.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

채용분야	인원	수행업무	근무장소
내국인 상담원	1명	○ 가정폭력 등 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상담 ○ 이주여성 권익옹호 및 역량강화 활동 ○ 이주여성 상담 및 사례관리, 폭력피해 예방 활동 ○ 이주여성상담소 회계 및 운영 등	전북이주여성 상담소

2. 채용 분야별 응시(지원)자격 및 우대사항

채용분야	응시(지원)자격 및 자격기준
공통사항	<p><u>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사람중에서</u></p> <p>아래 각 개별항목을 충족한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)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3) 사회복지시설·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(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 제외)이 있는 자 또는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<p>*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을 외국인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의미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4) 만 60세 이하5)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가능한 자 (전북지역 찾아가는 상담 진행해야 함)

채용분야	응시(지원)자격 및 자격기준
	<p>〈 결격사유 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 2.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3.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 4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5.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에 해당하는 자 6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,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자 7.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자 등 8.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

4. 근로조건

구 분	내 용
수습기간	3개월
급여수준	여성가족부 예산지원내에 내부규정에 의함.
근로조건	주 40시간 (야간 및 공휴일 탄력 근무 할 수 있음)
계약기간	2022년 4월 ~ 12월 (사업실적에 따라 재계약함)

5.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

구 분	일 정	비 고
공고기간	2022년 3월 14일(월) ~ 3월 18일(금) 14:00	
서류접수	2022년 3월 16일(수) ~ 3월 18일(금) 14:00 (주중 09:00 ~ 18:00 서류접수) * 12:00 ~ 13:00 점심시간	* 토·일요일 접수하지 않음 * 3월 18일(금) 14:00까지만 접수
서류전형 합격자	2022년 3월 18일(금) 17:00 예정	개별통보
면접전형	2022년 3월 21일(월) 14:00 예정	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면접전형 합격자	2022년 3월 22일(화) 10:00 예정	* 홈페이지 공지 확인 *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시 차 순위자로 대체 가능
- 여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등 신원조회 후 근로계약 체결
- 지원자가 한 명일 경우, 재공고 할 수 있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6. 접수

- 접수방법
 - 방문접수만 가능 (인터넷 · 메일 · 팩스 · 우편 접수 불가)
- 접수처
 -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 나무빌딩 5층 전북이주여성상담소
- 문의전화 : (063) 255-1366 채용담당자

7. 응시자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(소정양식)
- 자기소개서 1부(소정양식)
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제출
- 경력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,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 제외함)
-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

*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발급 제출함

< 채용 후 제출 서류 >

- 채용 신체 검사서 및 범죄경력 조회서
- 등본 제출 및 상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

8. 기타 유의사항

- 부정한 목적으로 채용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,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채용대상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**14일 이내**에 구직 서류 **반환**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안에 반환합니다. 또한 180일 이후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 합니다.
-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 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1명이 지원한 경우 5일 연장 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,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학위증명서,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.
-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,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.